



2014년 9월 17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장(043-870-5510), 주순영 주무관(043-870-5515)

## 포장상품의 양표시에 대한 국제기준 논의

- 2014년 국제법정계량기구/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 총회 서울 개최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포장상품의 양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국제법정계량기구(OIML) 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 총회를 9.15~9.19일 5일간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개최한다.
- 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(Prepackaged Products Technical Committee)는 소비생활제품의 국제적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회원국 간 제도적, 기술적 논의를 통해 국제기준을 제정한다.
  - \* 국제법정계량기구(OIML, Organiz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)는 계량에 관한 국제기준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 12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부간 국제기구
  - \* 정량표시상품 :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 (예: 우유 900 ml, 고추장 1 Kg, 호박엿 340 g, 락스 4 L)
- 금번 서울총회는 미국, 독일, 중국, 일본 등 20개 회원국 40명의 정부 대표가 참석하며, 회원국 간의 정량표시상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나올 수 OIML 회장 피터 메이슨(P. Mason)이 특별히 참석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포장상품의 양에 대한 정확성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성의 기준과 검사방법,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

있는 **상품의 양을 포장상품에 표시하는 방법**, 포장상품의 관리제도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된다.

-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와 개발도상국의 상충된 이해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포장상품의 표시방법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키고, 국내산이나 수입산 상품의 **양 부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관리방안**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예정이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OIML 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 서울총회 개최를 통해 국내 수출입업체가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,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포장상품 관련 해외 규제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 또한, **국민소비 생활 보호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국제무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장상품의 정량관리에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** 계획이다.

- [붙임] 1. OIML/TC6 개요  
2. OIML 회장 주요이력  
3. 각국의 정량표시상품 관리 사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주순영 주무관(☎ 043-870-55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□ 개요**

- **정량표시상품에 대한 행정상, 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OIML의 기술위원회**

\* OIML :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(국제법정계량기구)  
우리나라는 1978. 6. 1 정회원국으로 가입

- **의 장** : Mr. Willem Kool (영국)

- **간 사** : Mr. Jaco Marneweck(남아프리카공화국)

e-mail : marnewj@nracs.org.za

Tel : +27 12 428 5152 , Fax : +27 12 428 6552

- **회원국** : 정회원 30개국, 준회원 17개국

<b>정회원</b>	호주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브라질, 캐나다, 크로아티아, 쿠바, 체코, 덴마크, 프랑스, 독일, 일본, 한국, 네덜란드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중국, 폴란드, 슬로바키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스페인, 스위스, 터키, 영국, 미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, 세르비아, 베트남
<b>준회원</b>	핀란드, 아일랜드, 루마니아, 스웨덴, 탄자니아, 보스니아, 불가리아, 대만, 이란, 이스라엘, 라이베리아, 리투니아, 남비아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슬로베니아, 아랍에미레이트

**○ 발행 문서**

- R 79 : 정량표시상품 표시사항(1997, 개정 중)
- R 87 : 정량표시상품 샘플링 요구사항(2003, 개정 중)

**○ 주요 사업**

- 사업범위 확대에 따라 '14부터 세부 프로젝트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임
- \* 프로젝트 1 : 에어로졸의 질량 및 부피량 표기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검토
- \* 프로젝트 2 : 계량공무원의 사후 관리 시 샘플링 간소화 방안
- \* 프로젝트 4 : 정량표시상품의 국제인증제도 개발
- \* 프로젝트 5 : MCB(Measuring Container Bottles, 부피표기가 된 포장용 병)

<p>개인이력</p>	<p>○ Mr. Peter Mason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적 : 영국</li> <li>- 옥스퍼드 Oriel대 졸업</li> </ul>	
<p>주요 이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국 국립계량원(National Measurement Office, NMO) 원장 역임</li> <li>- 1973년 영국 상무성 입사. 인수위원회, 금융 서비스, 경쟁정책 및 소비자 보호정책 관련 업무 수행</li> <li>- '11.10월~: OIML 회장 (임기 5년)</li> </ul>	

# 붙임 3

## 각국의 정량표시상품 관리 사례

### □ 우리나라

#### ❖ 대상품목

●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쌀, 조리식품 등 26종



### □ 유럽

#### 유럽의 e-marking 제도

- 법정계량유럽연합(WELMEC, 30개 회원국)의 e-마크 지침에 따라 1990년 초부터 양(量)을 보장하는 제도 실시
  - OIMLR 79 및 R 87 기준
  - 수입품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허가 또는 e-마크의 인증 요구



### □ 중국

#### 중국의 e-marking 제도

- 2001년 4월부터 EU의 e-마크제도도 도입한 C-마크제도 시행
- 인증 받은 상품에는 "C" 마크를 부착
  - 1,200여 업체 인증(2006)
  -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(AQSIQ)에 의해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

